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

2006년도 제13차 회의

1. 일 자 2006년 6월 22일 (목)
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 이 성 남 위 원 (의장직무대행)

강 문 수 위 원

이 덕 훈 위 원

이 승 일 위 원 (부총재)

심 훈 위 원

박 봉 흠 위 원

4. 결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(해외출장)

5.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

김 수 명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

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

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

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최 재 현 금융결제국장

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

장 세 근 공보실장

6. 회의경과

가. 의결안건

<의안 제23호 — 「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」개정(안)>

(1) 담당 부총재보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'06.4.1일 시행)에 의거 한은금융망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 는 요건을 구비하도록 관련사항을 명시하고, '05.3월 이후 차액결제 참가기관 간 자금조정방식이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 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은행앞 담보증권 제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「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」의 일 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「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

<붙 임>「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」개정(안)

(한국은행 홈페이지 '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' 또는 2006년 6월호 조사통계월보 '한국은행의 주요활동 -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'참조)

<의안 제24호 — 「2006년 3/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」>

(1)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원활화를 위하여 2006년 3/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006년 2/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2006년 3/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한도를 9조 6,000억원으로 정한다.

<의안 제25호 — 「2006년 3/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」>

(1)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3/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2006년 2/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의결사항

2006년 3/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.